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4호 2023. 1. 20(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3-15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실상사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96호 남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열람 공고----- 5
- 남원시 공고 제2023-104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남원시 공고 제2023-134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3-15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실상사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사업인 『실상사 역사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같은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1월 20일

I.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역사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실상사 공 원	역사공원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번지 일원	63,475	-	63,475	전라북도 고시 (제2015-250호) (2015.11.13.)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 경)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변경후	
합 계	63,475	-	63,475	2,741	증 38	2,779	
소 계	41,241	증 176	41,417	2,741	증 38	2,779	
시 설	교통시설	610	-	610	-	-	
	조경시설	3,543	-	3,543	-	-	
	휴양시설	164	-	164	20	-	20
	교양시설	29,209	증 176	29,385	1,532	증 38	1,570
	편익시설	5,845	-	5,845	941	-	941
	관리시설	1,870	-	1,870	248	-	248
녹 지	22,234	감 176	22,058	8,223	-	8,223	

3.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변경)

가.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계			63,475	63,475	2,741	2,779	
공원시설 합계			41,241	41,417	2,741	2,779	
교통 시설	소계		610	610	-	-	
	1	진입광장	295	295	-	-	
	2	도로	315	315	-	-	
	2-1	진입로1	315	315	-	-	
조경 시설	소계		3,543	3,543	-	-	
	3	구품연지	2,148	2,148	-	-	
	3-1	연지	1,614	1,614	-	-	
	3-2	산책로1	353	353	-	-	
	3-3	산책로2	181	181	-	-	
	4	청명의숲	547	547	-	-	
	4-1	산책로	417	417	-	-	
	4-2	쉼터1	21	21	-	-	
	4-3	쉼터2	23	23	-	-	
	4-4	쉼터3	21	21	-	-	
	4-5	본래부처실	65	65	-	-	
	5	사색의숲	848	848	-	-	
	5-1	산책로	692	692	-	-	
	5-2	석수조	107	107	-	-	
	5-3	쉼터	49	49	-	-	
휴양 시설	소계		164	164	20	20	
	6	쉼터	164	164	20	20	
교양 시설	소계		29,209	29,385	1,532	1,570	
	7	성소영역	22,615	22,791	637	675	
	7-1	보광전지	3,792	3,792	66	66	
	7-1-1	보광전	3,787	3,787	61	61	
	7-1-2	칠성각	5	5	5	5	
	7-1-3	석등	-	-	-	-	
	7-1-4	3층석탑1	-	-	-	-	
	7-1-5	3층석탑2	-	-	-	-	
	7-2	약사전지	5,880	5,880	124	124	
	7-2-1	약사전	5,384	5,384	51	51	
	7-2-2	명부전	73	73	73	73	
	7-2-3	승방지 전시관	423	423	-	-	
	7-3	화엄전지	1,662	1,838	222	260	화엄전화장실 부지 및 건축 규모 변경
	7-3-1	화엄전	1,656	1,656	222	222	
	7-3-2	연결로	6	6	-	-	
	7-3-3	화엄전 화장실	-	176	-	38	신축
	7-4	목탑지 마당	4,790	4,790	16	16	
	7-4-1	목탑지	4,621	4,621	-	-	
7-4-2	만세루터	153	153	-	-		
7-4-3	범종각	16	16	16	16		

구분	시설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편익 시설	7-4-4	기외탑	0	0	-	-		
	7-5	텃밭마당	1,882	1,882	12	12		
	7-5-1	텃밭	1,870	1,870	-	-		
	7-5-2	구)해우소	12	12	12	12		
	7-6	극락전지	4,165	4,165	87	87		
	7-6-1	극락전	4,112	4,112	34	34		
	7-6-2	극락전 묘사채	53	53	53	53		
	7-6-3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	-	-	-		
	7-6-4	수철화상능가보월탑	-	-	-	-		
	7-6-5	증각대사용료탑	-	-	-	-		
	7-6-6	증각대사용료탑비	-	-	-	-		
	7-7	천왕문지	444	444	110	110		
	7-7-1	천왕문	55	55	55	55		
	7-7-2	불이문	55	55	55	55		
	7-7-3	진입로	334	334	-	-		
	8	출가 및 학림영역	4,255	4,255	795	795		
	8-1	출가지	3,389	3,389	531	531		
	8-1-1	한주처	771	771	175	175		
	8-1-2	주지스님 묘사채	1,197	1,197	56	56		
	8-1-3	묘사채 세면장	21	21	21	21		
	8-1-4	학림학사	1,330	1,330	209	209		
	8-1-5	학림세면장	70	70	70	70		
	8-1-6	음수대	-	-	-	-		
	8-2	학림지	866	866	264	264		
	8-2-1	도서관	124	124	124	124		
	8-2-2	학림강당	742	742	140	140		
	9	학술연구센터	943	943	100	100		
	10	원지	1,396	1,396	-	-		
		소계	5,845	5,845	941	941		
		11	주차장	1,287	1,287	-	-	
		12	다원	272	272	72	72	
		13	보적당	1,510	1,510	198	198	
		13-1	숙소동1	826	826	108	108	
	13-2	숙소동2	684	684	90	90		
	14	양혜당	1,058	1,058	254	254		
	14-1	공양간	1,009	1,009	205	205		
	14-2	부속창고	49	49	49	49		
	15	템플스테이	1,637	1,637	336	336		
	15-1	강당	483	483	93	93		
	15-2	숙소	763	763	159	159		
	15-3	세면장	391	391	84	84		
	16	생태화장실	46	46	46	46		
	17	세면장	35	35	35	35		
	소계	1,870	1,870	248	248			
관리 시설	18	공원관리시설	1,470	1,470	248	248		
	18-1	종무소	1,322	1,322	100	100		
	18-2	분뇨처리장	33	33	33	33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8-3	분리수거장1	43	43	43	43	
	18-4	분리수거장2	72	72	72	72	
	19	하수처리장	400	400	-	-	
녹지	녹지		22,234	22,058	-	-	화업전 부지규모 변경에 따른 녹지경계 조정

II.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개요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실상사 역사공원 정비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47-4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17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대한불교 조계종 실상사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2023년 04월 30일
5. 사업비 : 299백만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	면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1필지			876	176					
1	남원	산내	입석	47-4	답	876	176	대한불교 조계종 실상사				

남원시 공고 제2023-96호

남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열람 공고

남원시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남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규칙 제4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1월 20일

1. 열람목적 : 「남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내용 열람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주요 내용
 - 가. 계획범위 : 752.1km²(남원시 행정구역 전역)
 - 나. 주요내용
 - 저감대책 :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총 135건(구조적 105, 비구조적 30)
3. 관계자료는 게재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23. 01. 20. ~ 2023. 02. 19.(30일간)
5. 열람장소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과(☎ 063-620-6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 - 104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일

남 원 시 장**『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개정이유**

「춘향골체육공원」의 명칭이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물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2, 안 별지 제1호서식)
- 나. 명칭 현행화를 위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17. ~ 2023. 2. 7.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yjjcom@korea.kr), fax(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63-620-5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고 제2023-134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안 제20조의2제1항)
- 나. 경관지구 종류별 건폐율 규정 개정(안 제39조제1항)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20. ~ 2023. 2. 9.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16),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도 시 과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 (안 제20조의2제1항)
- 나. 경관지구 종류별 건폐율 규정 개정 (안 제3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첨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를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300미터

제39조제1항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한다”를 “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조항 신설 2018.6.29.></p> <p>1.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며 <u>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u></p> <p>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 2호의 주택. 마을 내 주택 간 거리는 주택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며,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 (다만, 남원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확인된 시민이 100kw 이하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할</p>	<p>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 ----- -----.</p> <p>1.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u>300미터</u></p> <p>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경우, 차폐시설(임야)이 존재할 때는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5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다)</p> <p>2의2. 5호 미만은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다만, 해당 거주자 및 건축주 동의 시 제외)</p> <p>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다만, 2년 이상 경작지에 한정하며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동의 시 제외)</p> <p>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p> <p>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입지 제한</p> <p>② ~ ④ (생략)</p> <p>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u>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u>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p>	<p>2의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 <u>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시가지경관</u></p>

시 보

현 행	개 정 안
<p>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② (생략)</p>	<p><u>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붙임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4. 1.]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1. 규제사무명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안전건설국 도시과 국 장 : 지방서기관 이영근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박승용 담 당 : 지방시설주사 성월계, 작성자 : 지방시설주사 심규성					
4. 근거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가목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피규제자 :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 - 이해관계자 : 남원시민 등					
6. 규제 존속기한	-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자 함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종전규제》</p> <p>○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p> <p>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p> <p>《개정규제》</p> <p>○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p> <p>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300미터</p>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 및 발생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조례를 신설하게 됨
- 상위법에 따라 특정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이에, 특정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 됨

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특정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발행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규정
-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정주 환경 보전을 위해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요소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여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 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에 대한 반대나 사회적 제약 요소는 없을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본 실현 가능성

- 종전의 운영 중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및 타시군의 조례 개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시에 맞는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정함에 따라 실현 가능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 발전시설 입지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로 규제 외 다른 대안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최대한 계량화하여 제시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비용 발생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 발전 사업자는 조례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비용손실 최소화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규제로 인하여 허가 건수 및 전기사업 측면에서는 다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유도함으로써 공익차원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여부 등 : 해당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7.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로 운영중인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

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규제기준·절차 등이 명확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존속기간이 없음에 따라 미 설정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적정함

10.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가목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 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p>(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p> <p>(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u>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u>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